



제 12 장

변호사 공익활동

변호사공익활동
변호사공익활동
변호사공익활동
변호사공익활동
변호사공익활동



제12장 변호사 공익활동

1. 공익활동 개요

가. 개 요

변호사 공익활동의 법정 의무는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법률 제6207호)에 따른 것으로, 동법 제27조는 변호사로 하여금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다른 전문자격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변호사 공익활동의 법적 의무화는, 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 추구만을 위한 직업인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주요한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진 법률전문직임을 확인하고, 모든 변호사가 일정 시간을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 사명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공익활동의 범위 및 그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지방변호사회는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관련 법규

1) 변호사법

-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2)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공익활동의 내용] 공익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2.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3.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4.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5.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6.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7.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또는 입법 연구 등 법률지원 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8.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제3조[공익활동 등의 실행] 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조경력이나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5조[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돈은 제1항의 특별기금에 입금시킨다.

제8조[공익활동 등의 보고] ① 개인회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소속회원의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규정에 정한 공익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3)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

제2조[권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공익활동의 범위와 내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범위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2. 지방변호사회별 운영개요

가. 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2008년 말 기준]

지방회	내용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원조 제도 운영 • 무료법률상담(서울회 종합법률센터 및 홈페이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외국인 노동자법률상담소,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답변 서비스) • 각종 변호사단 운영(당직변호사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 법원소송구조 결정사건 수행 변호사 •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운영 • 사법연수생 실무수습지도 • 사무직원 양성교육 실무수습지도 • 각종 후원금 및 인권관련 기금, 지원금, 재난구호 성금 기탁
경기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의정부지법 및 고양지원 민원상담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 • 양로원 및 지적장애인보육원 등 각종 성금 기탁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인천지법 및 부천지원 무료상담소, 인천광역시 시청종합정보센터) • 당직변호사활동 • 각종 성금 및 장학금 전달
경기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수원지법 종합민원실) • 각종 변호사단(당직변호사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 • 민사사건소송구조제도 • 각종 성금 기탁 및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청주지법 등기민원실) • 어르신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급식 • 각종 변호사단(당직변호사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민사소액사건변호인단, 소송구조변호인단) • 각종 성금 및 장학금 전달 • 어린이재단, 다문화가정 지원 등 기관 및 소외 단체 협력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홈페이지 및 대전법원 청사) • 각종 변호사단(당직변호사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외국인노동자법률지원변호사단, 법률구조당변호사단,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 • 제소전 화해 • 각종 성금 기탁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홈페이지, 대구법원 종합민원실, 대구시내 23개 사회복지관 및 8개 경찰서, 시청 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구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 각종 변호사단(당직변호사단,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소액사건법률지원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 • 청소년 준법계도 강연 및 일반 시민 대상 생활법률 강연 • 각종 성금 기탁

지방회	내용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부산지법 및 동부지원 무료법률상담실) • 각종 변호사단(당직변호사단,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이주민법률지원단) • 변호사명예교사 제도 • 제소전 화해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울산법원 민원상담실)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법원 민원실, 함안·의령 등 무변촌) • 각종 변호사단(당직변호사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홈페이지, 광주고법 변호사대기실) • 각종 변호사단(당직변호사단,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인터넷무료법률상담변호인단,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 YMCA·YWCA 무료법률지원단,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 변호사명예교사 제도 • 변호사 사무직원 양성교육 • 사법연수생 실무수습 지도 교육 • 각종 성금 기탁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전주지법 구내 전북회 사무국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 당직변호사활동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

나. 지방변호사회별 공익활동 규정시간 및 시간당 기금 현황

[2009년 말 기준 / 단위 : 시간, 원]

지방회	규정시간	시간당 기금	지방회	규정시간	시간당 기금
서울	20	30,000	대구	20	20,000
경기북부	20	20,000	부산	20	20,000
인천	20	30,000	울산	30	20,000
경기중앙	20	30,000	경남	30	30,000
강원	30	20,000	광주	20	30,000
충북	30	20,000	전북	20	30,000
대전	20	20,000	제주	30	20,000

3. 공익활동 실행 결과

가. 2008년 결과

1) 전체 현황(완수율 99.6%)

[단위 : 명, 원]

지방회	전체 회원	면제회원				대상 회원	완수 회원	미완수 회원	기금
		2년 미만	60세 이상	기타*	계				
서울	6,273	1,060	773	154	1,987	4,286	4,265	21	15,326,200
경기북부	186	28	14	50	92	94	93	1	-
인천	293	39	21	14	74	219	219	0	-
경기중앙	462	74	47	20	141	321	320	1	2,406,447
강원	75	2	8	1	11	64	64	0	-
충북	73	4	4	3	11	62	62	0	-
대전	259	21	27	10	58	201	201	0	760,000
대구	332	10	47	12	69	263	263	0	1,960,000
부산	338	33	80	5	118	220	220	0	800,000
울산	92	12	5	0	17	75	75	0	-
경남	147	5	11	6	22	125	125	0	-
광주	213	12	36	13	61	152	152	0	-
전북	107	12	19	1	32	75	75	0	-
제주	37	2	3	0	5	32	32	0	-
계	8,887	1,314	1,095	289	2,698	6,189	6,166	23	21,252,647

* 휴업, 소속변경, 등록취소, 연락두절, 기타 정당한 사유로 공익활동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회원

※ 공익활동기금 납부자는 완수회원으로 간주

[기금 납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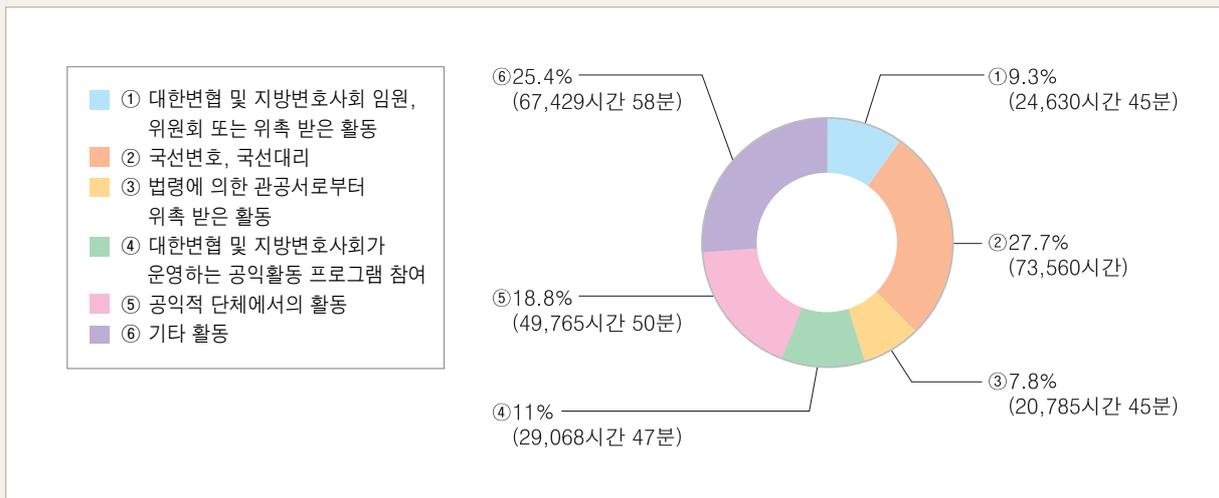
지방회	서울회	경기중앙회	대전회	대구회	부산회	계
회원 수	29	4	6	12	3	54

2) 공익활동 내용

[단위 : 시간]

회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계
서울	19,774	21,535	11,548	16,727	38,862	61,291.20	169,737 시간 20 분
경기북부	214.30	4,736	0	1,551.11	1,391	0	7,892 시간 41 분
인천	118.15	3,908	1,110.35	330.36	632.10	3,224.38	9,324 시간 14 분
경기중앙	1,132	9,631	1,337	668	2,580	1,386	16,734 시간
강원	187	3,285	432	143	524.40	0	4,571 시간 40 분
충북	80	1,650	471	101	180	90	2,572 시간
대전	404	2,254	1,400	968	788	247	6,061 시간
대구	282	7,240	1,112	2,120	742	530	12,026 시간
부산	698	9,002	1,225	2,405	1,542	448	15,320 시간
울산	312	1,120	100	200	768	0	2,500 시간
경남	254	922	625	2,090	498	0	4,389 시간
광주	221	2,538	801	1,295	514	147	5,516 시간
전북	174	3,946	298.10	470	444	3	5,335 시간 10 분
제주	780	1,793	326	0	300	63	3,262 시간
계	24,630 시간 45 분 (9.3%)	73,560 시간 (27.7%)	20,785 시간 45 분 (7.8%)	29,068 시간 47 분 (11%)	49,765 시간 50 분 (18.8%)	67,429 시간 58 분 (25.4%)	265,241 시간 5 분 (100%)

- * ①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임원, 위원회 또는 위촉 받은 활동
- ② 국선번호, 국선대리
- ③ 법령에 의한 관공서로부터 위촉 받은 활동
- ④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 참여
- ⑤ 공익적 단체에서의 활동
- ⑥ 기타 활동



나. 2000 ~ 2007년 결과

1) 전체 현황

[매년 말 기준 / 단위 : 명, %, 원]

연도	전체 회원	면제회원				대상 회원	완료 회원	미완료 회원	완수율	기금
		2년 미만	60세 이상	기타	계					
2007	8,140	1,236	1,063	284	2,583	5,557	5,544	13	99.8	38,453,839
2006	7,604	1,235	1,129	227	2,491	5,113	5,096	17	99.7	30,260,900
2005	6,997	1,310	995	215	2,520	4,477	4,449	28	99.3	33,521,940
2004	6,299	1,155	945	185	2,285	4,014	3,919	95	97.6	25,267,000
2003	5,586	906	900	500	2,306	3,280	3,105	175	94.5	29,414,500
2002	5,582	930	909	344	2,183	3,399	3,262	137	95.9	31,716,920
2001	4,855	673	859	354	1,886	2,969	2,630	339	88.6	31,173,087
2000	4,114	529	783	45	1,357	2,757	2,577	180	93.5	34,923,782

2) 공익활동 내용

[단위 : 시간, 명]

연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계	기금 납부
2007	11,844 (5%)	65,773 (27.8%)	31,434 (13.3%)	30,810 (13%)	36,390 (15.3%)	60,355 (25.5%)	236,606 (100%)	93
2006	17,479 (8.5%)	54,100 (26.1%)	42,701 (20.7%)	21,298 (10.3%)	19,064 (9.2%)	52,094 (25.2%)	206,736 (100%)	74

- * ①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임원, 위원회 또는 위촉 받은 활동
- ② 국선번호, 국선대리
- ③ 법령에 의한 관공서로부터 위촉 받은 활동
- ④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 참여
- ⑤ 공익적 단체에서의 활동
- ⑥ 기타 활동

